

●환경부공고제2020-929호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측정소별 환경변화, 측정장비 교체 및 운영 결과에 따른 항목별 경보기준을 조정하여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물감시장치 교체에 따른 생물감시 항목 경보기준 변경

나. EC, TN, TP 항목 경보기준 조정

다. 탁도 항목 경보기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담당자 : 송인준 사무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 전화 : 044-201-7069(팩스 : 201-7070)

○ e-mail : songij@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2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서비스 욕구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의 지원인원과 예산은 한정적